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022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0222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소25678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영

변론 종결 2020. 11. 26

판결선 고 2021. 1. 14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소256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3,7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12. 1.부터 경산시 B 도로 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C 대 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48,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33. 3. 9. 경산시 E 토지를 매수하여 여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는 1977. 5. 31.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또한 망인은 1933. 3. 5. 경산시 F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는 1933. 7. 1. 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각 토지에 관하여 1989. 4.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각 토지는 1954년경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제1토지는 2012. 9. 20.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1977년경 새마을농로로 이 사건 제1, 2각 토지를 편입한 후 1) 위 각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이 사건 제1,2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제1, 2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경산시 E 토지로부터 1969. 2. 24. I, J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에서 K 토지가 분할되었으며,망인은 1969. 3. 18. 분할된 위 I,K 토지를 타(동일인으로 보인다)에 처분한 점,② 위 I 토지와 K 토지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1,2각 토지는 대지에 연접한 통행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제1,2각 토지의 면적이 분할된 위 대지의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협소하고, 좌우로 도로와 연결되어 인근 대지 및 전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제1, 2각 토지를 오랜 기간 소유해 오면서 피고의 점유나 관리에 이의를 제기해 온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원고도 망인이 사망한 1989년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의 점유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이 사건 제1, 2각 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도로로 사용되는 상황을 용인하였고,원고는 위 각 토지에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낙형 판사 정석원 판사 김수연

1) 피고는 이 사건 제1, 2각 토지와 좌, 우에서 접하고 있는 G 도로 및 H 도로(위 각 토지는 용도상 일체가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에 관하여 1977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있다.